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심리 매뉴얼(안)

특허법원

I. 제정 취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관한 심결취소소송 중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서 절차 협의, 주장·항변의 제출기한 지정, 쟁점별 집중 심리 등을 규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송절차의 진행을 가능하게 함과 아울러, 적절한 변론절차의 진행방법과 증거의 신청·조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사건관계인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며, 충실한 소송 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II. 소장의 제출과 서면 공방

1. 원고의 소장 제출

가. 원고는 소장에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① 특허청의 심사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 절차의 경위
- ② 심결의 요지(심판 단계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판단)
- ③ 심결의 이유 중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
- ④ 심결의 위법사유에 관한 모든 주장
- ⑤ 관련 사건의 표시(정정심판 및 정정청구를 포함한 관련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관련 민사 본안 및 신청사건, 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그 결과 포함,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절차의 진행에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음)
- ⑥ 증거신청 계획 등을 비롯한 소송 진행 전반에 관한 의견

나. 원고는 위 ① 내지 ⑥항에 대응하는 증거와 그 입증취지를 기재한 증거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본적 서증과 소송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법인국적증명서(당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심결문송달증명원 등의 필수 첨부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① 거절결정 사건 : 심결문, 출원서, 의견제출통지서, 보정서, 의견서, 거절결정서
- ② 등록무효 사건 : 심결문, 등록원부, 등록공보, 선행발명(선행고안, 선행등록상표, 선



사용상표, 선행디자인)에 관한 증거

③ 권리범위확인 사건 : 심결문, 등록원부, 등록공보, 확인대상발명(확인대상고안, 확인대상상표, 확인대상디자인 등)의 설명서 및 도면

다. 소장에 가.항의 소장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또는 나.항의 기본적 서증이나 필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재판장 또는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 사무관 등은 원고에게 이를 보완하는 준비서면 또는 기본적 서증이나 필수 첨부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첨부 1]의 보정명령을 한다. 원고는 보정명령 수령 후 3주 이내에 보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준비서면, 증거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답변서 제출 등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체적 청구원인이 기재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주 이내에 [첨부 2]의 준비명령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답변서와 함께, 답변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증거 및 증거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② 원고의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
- ③ 원고의 주장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 ④ 그 밖에 심결의 적법 사유에 관한 모든 주장
- ⑤ 관련 사건의 표시(정정심판 및 정정청구를 포함한 관련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관련 민사 본안 및 신청사건, 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그 결과 포함,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절차의 진행에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음)
- ⑥ 원고가 제출한 서증에 대한 인부
- ⑦ 증거신청 계획 등을 비롯한 소송 진행 전반에 관한 의견

나. 재판장은 피고의 답변서 제출 후, 소장 및 답변서와 당사자들로부터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추가 서면 공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고에게 구체적인 반박, 증거의 추가 제출 등을 명하는 [첨부 3]의 준비명령을 한다. 원고는 준비명령 수령 후 3주 이내에 준비서면, 증거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Ⅲ. 사건의 분류와 변론의 준비

1. 사건 분류

재판장은 당사자 사이의 서면 공방이 완료되면,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 서면과 증거



를 토대로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의 협의나 구체적인 심리계획의 수립 등이 필요한 사건 인지를 검토하여, 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사건과 ②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사건으로 분류한다.

2. 변론기일을 지정할 사건의 변론준비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장은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원고 및 피고에게 [첨부 4]의 요약쟁점정리서면의 제출을 명하는 변론준비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재판장은 당사자의 서면 공방 결과를 참작하여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한, 전문가 증인 등 시일을 요하는 증거의 신청 기한 등을 정한 [첨부 5]의 변론준비명령을 할 수 있다.

3. 사건 관리를 위한 화상회의

가. 재판장은 영상·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하 '사건관리 화상회의')으로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재판장은 수명법관을 지정하여 위 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나. 사건관리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에게 화상회의의 개최사실을 통지하고, 그에 관한 [첨부 6]의 준비명령을 할 수 있다.

다. 사건관리 화상회의에서는 아래 사항을 협의할 수 있고,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 7]의 준비명령을 할 수 있다.

- ① 변론기일 횟수 및 일자, 각 기일별 진행사항
- ②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한(종합준비서면의 제출기한, 전문가 진술서 제출기한,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및 분량 포함)
- ③ 검증·감정이나 전문가 증인 등 시일을 요하는 증거방법의 신청 여부 및 기한
- ④ 전문심리위원 지정 여부
- ⑤ 당사자에 의한 기술설명회의 실시 여부
- ⑥ 청구항 해석에 관한 심리를 선행하여 진행할 것인지 여부
- ⑦ 쟁점의 확인 및 정리

라. 전항의 준비명령에서 사건 전반 또는 특정 쟁점에 대하여 종합준비서면의 제출을 명한 경우, 원고는 사건관리 화상회의 후 3주(또는 준비명령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피고는 원고의 종합준비서면이 제출된 날로부터 3주(또는 준비명령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각각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준비명령에서 정한 주장 및 증거의 제출·신청 기한 이후 주장을 추가·변경하거나 추가·변경된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제출·신청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청구원인이나 항변에 해당하는 주장, 신규성·진보성에 관한 주장 및 자유실시기술 항변에 있어서 가장 근접한 주된 선행발명을 변경하거나 선행발명들과 그 결합관계를 추가·변경하는 주장,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명세서 기재불비 주장 등).

4. 변론준비기일

가. 위 제3의 다.항에 정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증거조사 또는 기술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장은 수명법관을 지정하여 위 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나. 변론준비기일이 종결된 이후 주장을 추가·변경하거나 추가·변경된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전항과 같이 정당한 사유로 변론준비기일 종결 전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IV. 변론기일의 운영

1. 변론의 진행

가. 원고, 피고의 순서로 각 20분 이내의 범위에서 구술로 변론한다. 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위 시간 내에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변론시간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나. 구술변론을 위한 변론자료와 요약쟁점정리서면 등은 변론기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사건과 관련된 제품(등록특허·등록디자인, 선행특허, 확인대상발명·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품 등)을 지참하여 이를 시연하거나, 법정 컴퓨터, 실물화상기 등을 이용하여 관련 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재생하거나, 사진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변론할 수 있다.

2. 쟁점별 집중 심리

가. 재판부는 여러 개의 쟁점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쟁점별 집중심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협의하여 변론기일을 쟁점별로 운영할 수 있다.

(쟁점별 집중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의 예시) 청구항 해석이나 선행발명의



공지 여부 등이 선결문제가 되는 사건, 다수의 무효 사유가 주장되는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및 실시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나. 각 변론기일에서는 각 변론기일에 심리하기로 한 쟁점에 한하여 심리한다.

다. 재판부는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친 쟁점에 대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견해를 밝힐 수 있고, 당사자에게 위 견해를 토대로 나머지 쟁점 등에 대한 변론을 준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청구항 해석에 관한 심리

가. 당사자 사이에 청구항 등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그에 따라 나머지 쟁점에 대한 주장이나 증거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청구항 해석에 관한 심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청구항 해석에 관한 공방을 다른 쟁점에 앞서 진행할 수 있다.

나. 당사자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청구항 등에 관하여 정정심판, 정정청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그 진행상황을 재판부에 알려야 하고, 향후 정정심판, 정정청구 등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정정심판, 정정청구 등에 관한 계획 및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 재판부는 청구항 등의 해석에 관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견해를 밝힐 수 있고,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위 견해를 토대로 나머지 쟁점 등에 대한 변론을 준비할 것을 명하는 [첨부 8]의 준비명령을 할 수 있다.

4. 심결취소소송과 관련 침해소송의 심리

가. 특허법원에 동일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관한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이 함께 계속되어 있고, 양 사건의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동일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 사건을 병행하여 심리할 수 있다.

나.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에서의 관련 주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VI. 증거의 조사와 전문가의 참여

1. 증거의 신청 일반

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증인, 사실조회, 문서인증등본 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 검증 및 감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



으로 밝혀야 한다.

나. 재판장은 증거조사 절차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화상회의의 방법으로 절차 협의를 할 수 있다.

2. 검증 및 감정

가.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검증 및 감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나. 검증 및 감정의 채부, 검증 및 감정 사항과 방식의 결정, 전제사실의 확정 및 필요한 자료의 제공, 감정인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화상회의의 방법으로 절차 협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첨부 9]의 준비명령을 할 수 있다.

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검증 및 감정 목적물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라. 감정에 앞서 감정인신문기일을 진행할 수 있고,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의견에 모순되거나 명료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등의 경우 이들 사항에 관한 감정인신문기일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3. 전문가 증인

가. 전문가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증인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 10]의 전문가 증인 기본 사항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전문가 증인이 채택되면 전문가 증인의 증언이 담긴 증인 진술서와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신문은 전문가 증인의 증인 진술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주신문에서 제시하거나 인용하는 모든 자료는 증인신문기일 전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 전문가 증인이 외국인인 경우 당사자는 각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위한 통역을 대동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통역인 지정과 비용예납 등을 위해 대동할 통역인의 인적 사항과 통역비용을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통역인을 대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인신문기일 4주 전까지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통역인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재판장은 증인 진술서 및 증인신문사항의 제출기한, 증인신문시간의 제한, 전문가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한 등 전문가 증인의 신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첨부 11]의 변론준비명령을 할 수 있다.

4. 전문심리위원

가.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수인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전문심리위원의 사건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 전문심리위원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등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당사자는 전문심리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추가로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VII. 서류의 작성 및 서증의 제출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가. 기재 방식 및 내용

① 서면의 크기는 A4 용지(가로 210mm, 세로 297mm)로 하고, 위쪽 45mm, 왼쪽 및 오른쪽 각 20mm, 아래쪽 30mm(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

② 글자 크기는 12pt, 줄 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한다.

③ 30페이지 이상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목차를 기재하고, 목차 다음 부분에 2면 이내의 요약문을 첨부한다.

④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출된 경우 해당 부분에 증거번호를 표시한다.

⑤ 기술용어에 대하여는 각주로 그 용어의 정의를 기재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⑥ 요약쟁점정리서면에는 [첨부 4]의 별지와 같이 원고의 심결취소 사유의 요지, 다툼 없는 사항, 쟁점정리표, 증거설명, 추가 제출 증거, 서증에 대한 인부, 석명사항, 소송진행에 대한 의견 등을 간명하게 기재한다.

⑦ 종합준비서면에는 종합준비서면의 제출을 명한 사항에 관한 모든 주장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주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 제출된 준비서면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을 인용할 수 있다.

⑧ 요약쟁점정리서면 또는 종합준비서면을 제외한 나머지 준비서면에는 이미 주장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재하지 않는다.

나. 유의할 사항



① 특허·실용신안의 청구항 및 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보정 또는 정정청구 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중 소송의 대상이 되는 시점의 청구항 및 명세서의 기재 내용을 명시한다.

② 대상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 변동 내역과 최종 권리자를 기재한다.

③ 심판 단계에서 제출한 선행발명들 중 심결취소소송에서도 그대로 제출하는 것과 제출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심결취소소송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선행발명으로서 제출하는 것인지, 주지관용기술이나 기술상식, 기술수준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인지를 밝힌다. 하나의 문서에 수 개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어떤 것을 선행발명으로 주장하는 것인지 명확히 한다.

④ 선행발명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특허발명과 각 선행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을 대비한 구성대비표를 제출한다. 주지관용기술도 그 대비 대상이 되는 부분을 특정한다.

⑤ 진보성에 대한 주장,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하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누구인지와 그 기술수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⑥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주된 선행발명을 선정하고 선행발명들 사이의 구체적인 결합관계 및 결합이 쉬운 이유를 명시한다.

(예시)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X)

주된 선행발명인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OOOO 구성을 부가(또는 선행발명 1의 구성 2를 선행발명 2의 OOOO 구성으로 대체)하면 특허발명이 도출되고, 선행발명 1에 그와 같은 결합에 대한 시사가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결합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O)

⑦ 명세서 기재불비 주장은, 당해 특허·실용신안의 설명에 의하여 쉽게 실시가 가능한지 여부(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청구항이 당해 특허·실용신안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당해 특허·실용신안의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등을 적용법조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⑧ 청구항의 해석에 관한 심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청구



항 해석이 필요한 문구, 해당 문구에 관련된 명세서 기재 내용, 당사자가 주장하는 청구항 해석 내용 및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⑨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피고는 특허청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 거절결정, 심판원의 의견제출통지, 심결에서 나타난 거절 이유를 정리하여 기재하고, 소송 단계에서 주장하는 거절 이유가 그 중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힌다.

2. 증거설명서

가. 증거설명서에는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명시하고, 이를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바를 간략히 기재한다.

나. 신규성, 진보성, 자유실시기술 주장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선행발명으로 제출하는 것인지, 주지관용기술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인지 명확히 한다.

3. 서증 등

가. 당사자가 심사 및 심판 단계에서 제시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는 한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없으므로, 심사 및 심판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들 중 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되, 상대방이 제출한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아래 각 서류들은 소송절차에서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시) 심결문, 출원서 및 최초 명세서, 의견제출통지서, 보정서 및 의견서, 재심사 청구서, 거절결정서, 정정청구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서, 선행기술문헌 등

나. 외국어로 된 서증은 번역문을 첨부하되, 기계 번역을 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선행발명 등 주된 증거에 대하여는 발췌 번역문이 아닌 전문 번역문을 첨부하고, 그 중 입증취지와 관련된 부분은 밑줄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강조하여 표시한다.

다. 서증명은 문서의 제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을 표시하고, 제목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선행발명으로 제출하는 증거는 서증명에 이를 명시한다.

(예시) OO회사의 상품 카탈로그(2006. 1. 2. 발행). 선행발명 1(등록특허공보 제 00000호)

라. 하나의 서증에는 하나의 증거만이 포함되어야 하고, 관련된 내용인 경우 가지번호로 표시한다(갑 제2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등).



마.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롭게 제출하는 선행발명들은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심판 단계에서 제출하였던 선행발명들의 번호 다음에 이어서 선행발명의 번호를 붙인다. 예를 들어 심판단계에서 선행발명 1, 2, 3이 제출되었는데, 심결취소소송에서 선행발명 1은 그대로 제출하되 선행발명 2, 3은 제출하지 않고 새로 선행발명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선행발명 4로 한다.

바. 특허·실용신안 등의 기술적인 내용이나 디자인의 구체적인 형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시 제품이나 모형,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증거로 제출한다. 상표·디자인 사건의 경우 원본이 컬러인 서증은 컬러 상태로 제출한다. (끝)



[첨부 2]

특 허 법 원
제 0 부
준 비 명 령

사 건 2016허0000 등록무효(특)
[원고 주식회사 000 / 피고 000]

피고는 2016. 0. 00까지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 답변서와 증거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① 답변서의 제출

- ①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② 원고의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
- ③ 원고의 주장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 ④ 그 밖에 심결의 적법 사유에 관한 모든 주장
- ⑤ 관련 사건의 표시(정정심판 및 정정청구를 포함한 관련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관련 민사 본안 및 신청사건, 형사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및 사건명, 진행상황을 준비서면의 끝부분에 관련사건 항목을 마련해서 기재한다.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의 진행에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음)

② 위 ①항의 내용에 대응하는 증거방법 및 증거신청 계획(서증, 증인, 사실조회, 문서인 증등본 송부촉탁 신청, 검증 및 감정 등. 다만, 서증은 상대방이 제출한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증인, 사실조회, 문서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③ 원고가 제출한 서증에 대한 인부서의 제출(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서증만 표시할 것)

④ 외국어로 된 증거서류에 대한 번역문 제출(기계 번역문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



히 선행발명 등 주된 증거에 대하여는 발췌 번역문이 아닌 전문 번역문을 첨부하고, 그 입증취지와 관련된 부분은 밑줄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강조하여 표시할 것)

2016. O. O.

재판장 판사

◇ 유 의 사 항 ◇

이 사건에 관하여

- ① 우리 재판부는 당사자의 기일출석 횟수를 줄이면서도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집 중심리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기일은 1회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 ② 그러므로 당사자 쌍방은 주장과 증거를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까지 일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일을 지키지 아니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더 이상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④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의 변경신청은 사안이 복잡·난해하여 변론준비나 증거수집에 많은 기일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기일변경신청을 할 경우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한 한 상대방과 협의한 희망기일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에 게재된 '심결취소소송 심리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답변서의 작성 및 증거의 신청은 위 매뉴얼에서 정한 제출서류의 작성 방법 및 증거의 신청 방법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3]

특 허 법 원
제 0 부
준 비 명 령

사 건 2016허0000 등록무효(특)
[원고 주식회사 000 / 피고 00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리사 000 (귀하)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6. O. OO.까지 다음의 체크한 사항들이 포함된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내용
- 피고가 제출한 서증에 대한 인부서의 제출(다만,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서증만 표시할 것)
- 원고가 추가로 제출하거나 신청하는 증거와 그 입증취지(서증, 증인, 사실조회, 문서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 등. 다만, 서증은 상대방이 제출한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증인, 사실조회, 문서인증등본 송부촉탁, 검증 및 감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 외국어로 된 증거서류에 대한 번역문 제출(기계 번역문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선행발명 등 주된 증거에 대하여는 발췌 번역문이 아닌 전문 번역문을 첨부하고, 그 입증취지와 관련된 부분은 밑줄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강조하여 표시할 것)

2016. O. O.

재판장 판사



◇ 유 의 사 항 ◇

이 사건에 관하여

- ① 우리 재판부는 당사자의 기일출석 횟수를 줄이면서도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집중심리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기일은 1회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 ② 그러므로 당사자 쌍방은 주장과 증거를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까지 일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일을 지키지 아니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더 이상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④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의 변경신청은 사안이 복잡·난해하여 변론준비나 증거수집에 많은 기일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기일변경신청을 할 경우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한 한 상대방과 협의한 희망기일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에 게재된 '심결취소소송 심리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준비서면의 작성 및 증거의 신청은 위 매뉴얼에서 정한 제출서류의 작성 방법 및 증거의 신청 방법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4]

특 허 법 원
제 0 부
변론준비명령

사 건 2016허0000 등록무효(특)
[원고 000 / 피고 00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귀하)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000 (귀하)

이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을 2016. O. O. 00:00 특허법원 000호 법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은 2016. O. OO.까지 별지 요약쟁점정리서면의 작성요령에 따라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O. O.

재판장 판사



<별지>

요약쟁점정리서면

○ 사건번호 :

○ 제출자 :

I. 원고의 심결취소 사유의 요지

II. 다툼 없는 사항

III. 쟁점정리표

쟁점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

IV. 제출 서증(전자문서) 중 주요변론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증거설명

번호	서증의 이름	작성일	작성자	요지 및 입증취지

V.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추가 제출 증거

증거방법	입증취지

VI. 상대방 제출 서증에 대한 인부 의견

VII. 상대방에 대한 석명사항

VIII. 소송 진행에 대한 의견



※ 요약쟁점정리서면의 작성요령

요약쟁점정리서면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는 데에 활용될 예정이오니, 원고 및 피고는 1~2페이지 범위 내에서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원고의 심결취소 사유의 요지"란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의 구체적 위법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그 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항목을 나누어 기재함.

예컨대, 심결이 진보성 유무에 관하여 판단을 한 경우에는 '심결이 진보성 유무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심결이 진보성 유무 판단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를 기재하고, 심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한 경우에는 '심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심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를 기재함

[예시 1] 심결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이하 '청구항 1')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면서, 예컨대, ① 선행기술의 구성 1을 "A1"이라고 이해하여야 함에도 "A2"라고 잘못 이해하여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② 청구항 1의 구성 1을 "B1"이라고 이해하여야 함에도 "B2"라고 잘못 이해하여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③ 청구항 1의 구성 2와 선행기술의 구성 2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치한다고 잘못 인정하여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④ 청구항 1의 구성 3과 선행기술의 구성 3이 동일함에도 차이가 난다고 잘못 인정하여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⑤ 청구항 1의 구성 3과 선행기술의 구성 3의 차이점을 P라고 파악하여야 함에도 K라고 잘못 파악하여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⑥ 청구항 1과 선행기술의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잘못 판단하여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예시 2] 심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예컨대, ① 상표의 구성 중 "A"부분이 식별력이 없음에도 식별력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②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구성 "A"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없음에도 분리관찰한 잘못으로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③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또는 외관, 관념)과 선등록상표의 호칭(또는 외관, 관념)이 유사하지 아니함에도 유사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④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A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K는 유사하지 아니함에도 유사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2. '쟁점'이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항 즉,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을 의미하는 바, 원고 및 피고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과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다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항을 추출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 및 "쟁점"란에 기재함(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표를 더 추가할 수 있음)

[다툼 없는 사항의 예시] ① 심결에서 정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투지 아니함, ② 심결에서 청구항 1의 구성 중 구성 1이 선행기술에 나타나 있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투지 아니함, ③ 심결에서 청구항 2~5의 한정된 구성이 선행기술에 나타나 있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투지 아니함



[쟁점의 예시 1] ① 선행기술의 구성 1을 "A1"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A2"라고 이해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항 1의 구성 1을 "B1"이라고 이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B2"라고 이해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청구항 1의 구성 2와 선행기술의 구성 2가 상이한지 여부, ④ 청구항 1의 구성 3과 선행기술의 구성 3이 동일한지 여부, ④ 청구항 1의 구성 3과 선행기술의 구성 3의 차이점을 P라고 파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K라고 파악하여야 하는지 여부, ⑤ 청구항 1과 선행기술의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의 예시 2] ① 상표의 구성 중 "A"부분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성 "A"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과 선등록상표의 호칭이 유사한지 여부, ④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A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K가 유사한지 여부

3.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란에는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을 간략히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기재함. 이 항목에서는 상세한 논거를 기재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항의 개요만을 간략하게 기재하면 충분함

4. "제출 서증(전자문서) 중 주요변론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증거설명"란에는 서증번호, 서증의 이름, 작성일, 작성자,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을 기재하되, 다만 편의상 별도의 서면(증거설명서)으로 제출할 수 있음

5.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추가 제출 증거"란에는 이미 제출된 증거 이외에 추가로 제출할 증거의 유무를 밝히고 만일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방법 및 입증취지를 기재함. 추가제출 증거방법에 관하여는 반드시 증거신청서를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적법한 증거신청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고, 아울러 첫 기일에 모든 증거조사를 실시하므로,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할 때 추가제출 증거의 제출도 완료하여야 함

6. "상대방 제출 서증에 대한 인부 의견"란에는 문서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립인정, 성립을 다투는 문서에 대하여는 부인, 잘 모르는 문서에 대하여는 부지 등으로 기재함.

7. "상대방에 대한 석명사항"란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는 사항을 기재함

8. "소송 진행에 대한 의견"란에는 기일 진행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을 기재함

※ 기타사항

1. 변론의 진행순서 및 시간: 서면 및 증거의 확인, 원고의 심결취소사유 및 쟁점의 정리,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변론(각 20분 이내), 질의·답변, 보충변론 등의 순서로 진행되나, 사안에 따라서 진행순서 및 시간이 조금씩 달리될 수 있음

2. 변론 방법: 요약쟁점정리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기초하여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중심으로 변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PT자료를 활용한 변론을 하되, PT자료는 재판부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도면, 도표, 대비표, 증거 등을 법정스크린에 현출하여 놓고 변론하거나 증거설명 또는 증거탄핵 등을 하는 방식으로 변론하는 것을 권장함

3.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가 복잡하여 많은 변론시간이 소요되거나 진행순서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판부에 그 사정 및 필요한 예상 변론시간 등을 밝히면, 재판부에서 참고함 (끝)



[첨부 5]

특 허 법 원
제 0 부
변론준비명령

사 건 2016허0000 등록무효(특)
[원고 주식회사 000 / 피고 000]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000 (귀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귀하)

이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을 2016. O. O. 00:00 특허법원 000호 법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준비를 명합니다.

다 음

1. 원고와 피고는 2016. O. O.까지 모든 주장 및 그에 대한 주된 증거를 제출·신청하여야 합니다.
2. 증인신청, 감정신청 등 시일을 요하는 증거의 신청은 2016. O. O.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유의사항

가. 변론기일 변경 신청, 주장 및 증거의 제출·신청기한 연장신청은 기한이 도래하기 1주 전까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주장 및 증거의 제출·신청 기한 이후 주장을 추가·변경하거나 추가·변경된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신청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청구원인이나 항변에 해당하는 주장, 신규성·진보성에 관한 주장이나 자유실시기술 항변에서 주된 선행발명을 변경하거나 선행발명 및 그 결합관계를 추가·변경하는 주장,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명세서 기재불비 주장, 심판단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반하는 주장 등). 정당한 사유



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 우리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149조를 엄격히 적용할 예정입니다.

- 다. 변론기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피고 순서로 각 20분 이내의 범위에서 구두 변론 시간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구술변론을 위한 변론자료 등은 변론기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변론기일에는 필요한 경우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이나 모형, 관련 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특허법원에서는 '심결취소소송 심리 매뉴얼'을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를 참조하여 주시고, 특히 준비서면의 작성 및 증거의 신청은 위 매뉴얼에서 정한 제출서류의 작성 방법 및 증거의 신청 방법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016. O. O.

재판장 판사



[첨부 6]

특 허 법 원
제 0 부
사건관리 화상회의 준비명령

사 건 2016허0000 등록무효(특)
 [원고 주식회사 000 / 피고 00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귀하)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000 (귀하)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준비를 명합니다.

다 음

1. 사건관리 화상회의 일정

이 사건에 대한 사건관리 화상회의를 **2016. O. O. OO:OO**에 영상통화(스카이프, skype)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¹⁾ 당사자 및 관계인은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스카이프(skype)에 접속하고, 영상 및 스피커, 마이크의 상태 점검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관리 화상회의의 내용

사건관리 화상회의에서는 아래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후의 소송절차는 협의된 내용 및 일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미리 주장과 신청할 증거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147조 참조).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상대방 대리인과 아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론기일 일자 및 횟수, 각 기일별 변론 쟁점사항

나.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한(종합준비서면, 선행기술 관련 증거 등의 제출기한 포함)

다. 검증·감정이나 전문가 증인 등 시일을 요하는 증거방법의 신청 여부 및 기한

1) 화상회의를 위하여 “스카이프” 프로그램의 설치(위 프로그램은 www.skype.com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와 웹 카메라(화상 카메라), 헤드셋(스피커, 마이크) 등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 라. 전문심리위원 지정 여부
- 마. 당사자에 의한 기술설명회의 실시 여부
- 바. 청구항 해석에 관한 심리를 선행하여 진행할 것인지 여부
- 사. 쟁점의 확인 및 정리

3. 유의사항

- 가. 원활한 소송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에서 다투는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을 화상회의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구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해당 청구항, 용어(구, 절 포함) 등을 특정하여 주시고, 그에 대하여 주장하는 해석을 제출합니다.
- 나. 사건관리 화상회의 결과, 별도로 발령되는 준비명령에서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위반하여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로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주장 및 증거는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다. 특허발명의 무효사유에 관한 주장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최종 기한 이후에 아래 사항에 대한 주장을 추가·변경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①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학력, 자격, 종사기간 등)
 - ② 주된 선행발명의 특징
 - ③ 선행발명을 결합함에 있어 구체적인 결합관계
- 라. 특허법원에서는 '심결취소소송 심리 매뉴얼'을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를 참조하여 주시고, 특히 준비서면의 작성 및 증거의 신청은 위 매뉴얼에서 정한 제출서류의 작성 방법 및 증거의 신청 방법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016. O. O.

재판장 판사



[첨부 7]

특 허 법 원

제 0 부

절차에 관한 준비명령

사 건 2016허0000 등록무효(특)

[원고 000 / 피고 00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귀하)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000 (귀하)

위 사건에 관하여 2016. O. O. 사건관리 화상회의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에 기초하여 주장 및 증거방법의 제출기한과 변론기일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다 음

1. 원고의 종합준비서면 제출기한은 **2016. O. O.까지**로 합니다.

종합준비서면에는 쟁점에 관한 모든 주장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주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준비서면 제출 이후 주장을 추가·변경하거나 추가·변경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려면, 정당한 이유로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청구원인이나 항변에 해당하는 주장, 신규성·진보성에 관한 주장이나 자유실시기술 항변에서 주된 선행발명을 추가·변경하거나 선행발명들 및 그 결합관계를 추가·변경하는 주장,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명세서 기재 불비 주장, 심판단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반하는 주장의 추가·변경 등).

2. 피고의 종합준비서면 제출기한은 **2016. O. O.까지**로 합니다.

종합준비서면에는 쟁점에 관한 모든 주장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주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준비서면 제출 이후 주장을 추가·변경하거나 추가·변경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려면 정당한 이유로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1차 변론기일은 **2016. O. O. OO:OO** 특허법원 000호 법정에서 진행합니다.
- 가. 1차 변론기일에 논의할 쟁점은 특허번호 제00000호 특허 중 청구항 1의 진보성 인정 여부입니다.
- 나. 변론기일에는 원고, 피고 순서로 각 OO분간의 구두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다. 구두 변론을 위한 변론자료 등은 변론기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쟁점에 관한 전문가 증인의 신청 기한은 **2016. O. O.**까지로 합니다. 전문가 증인 신청서에는 전문가 증인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증인 기본사항 확인서{특허법원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 참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전문가 증인이 채택되고, 1차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함께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피고 협의 하에 1회 변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16. O. O.

재판장 판사



[첨부 8]

특 허 법 원
제 0 부
청구항 해석 및 변론준비명령

사 건 2016허0000 등록무효(특)

[원고 000 / 피고 00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귀하)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000 (귀하)

당사자의 현재까지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0 중 그 해석에 다툼이 있는 주요 용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아래 해석에 기초하여 변론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내용

【청구항 1】 패널의 테두리부에 각각 형성된 테두리 리브는 바닥면으로 갈수록 그 두께가 두꺼워지도록 일측면이 테이퍼면으로 구성되고, 상기 테두리부의 내부공간에는 격벽인 주 보강리브에 의해 분리되는 다수의 정방형 격자부가 형성되어지되, 그 격자 부의 내부공간에는 격자부의 내부를 4등분하는 보조 보강리브가 형성되어져 있으면서, 상기 각 보조 보강리브에 의해 4등분 된 격자부의 바닥층에는 다수개의 원형홈이 형성되어 상부로부터 가해지는 수직 하중과 편심 하중에 대한 지지력을 강화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강도 패널

2. 청구항 1의 "격자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청구항 1의 "격자부"는 무늬형 패턴을 가지도록 패널에 형성되는 원형홈을 밀집시켜 그룹(group)화한 부분이다.



이와 같은 원고 주장의 근거는, …… 이다.

나. 피 고

청구항 1의 "격자부"는 격자 형태로 배치되는 리브에 의하여 구획되는 영역이다.

이와 같은 피고 주장의 근거는, …… 이다.

3. 청구항 1의 '격자부'에 대한 해석

가. (구체적인 판단 근거의 적시)

나. 따라서 청구항 1의 '격자부'는 '격자 형태로 배치되는 리브에 의하여 분리되는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2016. 0. 0.

재판장 판 사



[첨부 9]

특 허 법 원

제 0 부

화상회의 준비명령

사 건 2016허0000 등록무효(특)

[원고 000 / 피고 00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귀하)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000 (귀하)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준비를 명합니다.

다 음

1. 화상회의 일정

증거조사 일정 등의 협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2016. O. O. 00:00에 영상통화(스카이프, skype) 방식으로 진행합니다.²⁾ 당사자 및 관계인은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스카이프에 접속하고, 영상 및 스피커, 마이크의 상태 점검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2. 화상회의의 내용

가. 화상회의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대리인과 아래 사항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감정 채부
- ② 감정 사항과 방식
- ③ 전제사실의 확정 및 필요한 자료의 제공
- ④ 감정인 선정

2) 화상회의를 위하여는 “스카이프(skype)” 프로그램의 설치(위 프로그램은 www.skype.com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와 웹 카메라(화상 카메라), 헤드셋(스피커, 마이크) 등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3. 유의사항

- 가. 주장 및 증거의 제출 기한 이후 주장을 추가·변경하거나 추가·변경된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149조를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 나. 특허법원에서는 '심결취소소송 심리 매뉴얼'을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를 참조하여 주시고, 특히 준비서면의 작성 및 증거의 신청은 위 매뉴얼에서 정한 제출서류의 작성 방법 및 증거의 신청 방법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016. O. O.

재판장 판사



[첨부 10]

전문가 증인 기본 사항 확인서

인적 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증립성			
1	원·피고(회사인 경우 대표이사 및 임직원, 이하 같음)와 친인척관계에 있습니까?	Y	N
2	원·피고와 채권·채무관계에 있습니까?	Y	N
3	원·피고와 업무를 같이 하거나, 계약관계, 고용관계 기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있었습니까?	Y	N
4	원·피고가 관여한 소송 또는 이 사건 특허/제품 등에 관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바 있습니까?	Y	N
5	본건 소송과 관련하여 원·피고에게 자문을 한 바 있습니까?	Y	N

전문성	
1	증인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오.
2	전문 분야에 관하여, (1) 현재 및 과거의 직업(재직기간, 직위/직책, 담당업무 포함)을 밝히고, (2) 학위/자격증, 논문/보고서, 기타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오. ※ 아래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첨부 가능

전문가 증인의 의무

전문가 증인은 당사자 일방에 편향되지 않게 사실과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증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해당 분야에서 널리 인정되는 사실/이론에 기초하여 진술하여야 하며, 자신의 주관적인 이론/해석에 기초하여 진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일 자 20
서 명



[첨부 11]

특 허 법 원
제 0 부
변론준비명령(전문가 증인)

사 건 2016허0000 등록무효(특)

[원고 000 / 피고 00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귀하)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000 (귀하)

2016. O. O. 00:00 변론기일에서의 전문가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준비를 명합니다.

다 음

1. 전문가 증인의 증인 진술서 등의 제출

가. 원고는 **2016. O. O.까지** 전문가 증인의 증인 진술서와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고의 주신문은 증인 진술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 증인에게 주신문에서 제시하거나 인용하는 모든 자료(관련 선행기술, 번역문, 실물 사진, 참고자료 포함)는 **2016. O. O.까지** 증거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전문가 증인에 대한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00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3. 당사자는 전문가 증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위하여 통역인을 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통역인 지정과 비용예납을 위해 **2016. O. O.까지** 대동할 통역인의 인적 사항과 통역비용을 재판부에 알려야 합니다.

4. 당사자가 따로 통역인을 대동할 수 없는 경우, **2016. O. O.까지** 재판부에 그 내용을 알리고 통역인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016. O. O.

재판장 판사